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05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구단1128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20. 7. 8.
판 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토지) 671,083,650원의 부과처분 중 10,000원 부분과, 지방교육세 134,216,730원의 부과처분 중 10,0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05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2016년 귀속 정기분 재산세(토지) 671,083,650원, 지방교육세 134,216,73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을 차별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취지 기재 각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평등원칙의 위반 여부

회원제 골프장은 높은 가격의 회원권을 구입한 소수의 사람들이 골프장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에 용이한 시설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05

서, 아직까지 일반국민들에게 사치성 시설이라는 인식을 근본적으로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은 일반인이 구입하기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할 것이고, 가사 회원제 골프장에서 비회원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이는 원칙적으로 회원권이 있는 지인과 동행할 경우 가능한 것이고, 회원권과 무관한 일반인들은 이용요금, 예약일 등에 있어 회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대중 골프장과 같은 정도로 비회원인 일반국민들에게 그 이용이 개방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등 참조}.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중 어느 범위 내의 것을 우선적 중과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정책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입법자는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 내지 승마장과 같은 여타의 체육시설보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현저하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설이용의 대중성, 녹지와 환경에 대한 훼손의 정도, 일반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두고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 골프장 등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헌법에 부합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가격 및 비회원의 그린피 등을 고려할 때 골프장 이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05

행위에 사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골프가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 스포츠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민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된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등 참조}.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임야의 경우 공시지가의 시가반영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여기에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므로 명목세율이 4%이지만 실효세율은 사실상 이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재산원본을 몰수하는 효과에 이르게 되어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등 참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높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것인가 또는 대중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기업주체의 자율적인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초래할 뿐, 골프장업의 운영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골프장 운영주체로서는 그 경영적 판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골프장 자본조달의 방법을 변경하여 회원제 골프장업에서 재산세가 중과되지 않는 대중 골프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병합) 결정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7-05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